

 재정경제부	보도참고자료		•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•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정부
	보도일시	2008.2.26(화) 조간부터	
생 산 일	2008.2.25(월)	생산부서	국고국 회계제도과
담당과장	정병기(T:2150-2460)	담 당 자	김숙진(T:2150-2463)

제 목: 「국가회계법」 시행을 위한 후속업무 본격추진

- 국가회계법이 07. 10.17일 제정·공포되어 09.1.1.부터 국가회계에 복식부기·발생주의 회계제도 전면 도입
- 동법 부칙제2조에 의거 국가회계제도개선실무위원회(이하 '실무위원회'/공동위원장: 재경부차관, 김경호위원)를 07. 10월 설치하고 그 하부기관으로서 '실무추진반'을 운영
 - 복식부기·발생주의 회계제도 조기정착 및 새로운 국가회계제도 정립을 위한 후속업무를 수행하여 그간 준비해 온 재정개혁과제를 마무리
 - * 제1차 실무위원회(07.10.24) 및 제2차 실무위원회(08.2.19)를 개최하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, 세부사업추진계획서 등 승인
- 전문 용역기관을 선정·운영
 - '삼일·삼정·율촌컨소시엄'과 08.2.25. 용역계약 체결하여 '실무위원회'의 후속업무를 지원토록 하여
 - 국가회계법(복식부기·발생주의 도입 등)이 09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

<참고> ▪ 국가회계법 주요내용 및 후속업무

재정경제부 대변인

<참고> 국가회계법 주요 내용 및 후속업무

가. 제정목적

- 국가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재정관리기반을 구축
- 국가 전체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절한 정보 생산·제공
- 원가정보 산출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체계 구축기반 마련

나. 주요 내용

- 재정에 복식부기·발생주의 회계제도 전면 도입
- 재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'통합재무보고서' 작성 및 국가 회계처리 준거가 될 '국가회계기준'의 제정근거 마련
- 후속업무 수행을 위해 '국가회계제도개선실무위원회' 및 '실무추진반' 설치근거 마련

다. 후속업무 주요 내용

- 재정·회계 관련 법제도 점검·보완 등 (금년 상반기)
 - 프로그램예산제도, 복식부기·발생주의 회계제도 등과 관련한 법제도 점검·보완
 - 국가회계업무 위탁기관 설립방안
 - 자산·부채 실사방안 마련, 실사 및 개시재무제표 작성 등
- 정보화시스템 산출물 점검 및 유관기관 교육 (하반기)
 - 결산보고서, 개시재무제표 등 정보화시스템 산출물 검증
 - 복식부기·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 모색